

# 서울이주여성쉼터 직원 채용 공고(연장)

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(사)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운영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‘서울이주여성쉼터’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(상담원)을 채용하고자 하니,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## 1. 채용 부문 및 인원

채용 부문	담당업무	인원	계약기간
직원(상담원)	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·스토킹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·상담·사례관리 등 지원 업무 전반	○명	정규직

## 2. 전형 일정

- 서류 접수 수: 2024. 10. 5. (토) ~ 10. 13. (일) 총9일
- 서류합격자 발표: 2024. 10. 14. (월)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 및 법인 홈페이지 게시([www.wmigrant.org](http://www.wmigrant.org))
- 면접 심사: 2024. 10. 15. (화)
- 최종합격자 발표: 2024. 10. 18. (금)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 및 법인 홈페이지 게시
- 근무 시작 일: 2024. 11. 1. (금) \*협의 가능
  - ※ 수습 기간은 입사 후 3개월(가정폭력상담원 교육 미이수자는 6개월)이며, 수습 평가를 통해 정직원으로 전환함.
  - ※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응시자 또는 합격자에게 사전 안내함.

## 3. 자격조건
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(100시간)을 이수하고,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여성
  - ※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, 입사 후 6개월 이내 교육 수료 필수임.
  - 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
  - 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
  - 3) 사회복지시설·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(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)이 있는 사람
  - 4)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(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)
- 우대조건
  - 1)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 가능자

## 4. 근무조건

- 보수수준: 사회복지사 5급
  - ※ 2024년 여성가족부 ‘여동·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’, 2024년 ‘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’ 적용
- 근무지: 서울이주여성쉼터(서울시 북부권역 소재. 비공개시설로 정확한 주소는 합격 후 안내함)
- 근무시간: 주 40시간
- 근무형태: 아래의 근무유형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력서에 순위대로 기재 바람.

선택유형	낮 근무	저녁 근무
근무시간	주 40시간, 월요일~금요일 (09:00 출근 ~ 18:00 퇴근)	주 40시간, 월요일~금요일 (17:30 출근 ~ 익일 10:00 퇴근)
당직근무	- 주 1회 평일 당직 - 월 1회 주말(토, 일) 당직 또는 시간외근무	- 분기 1회 주말(토, 일) 당직 또는 시간외근무

※ 근무유형은 사전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
※ 생활시설의 특성상 주중, 주말, 휴일 당직이 상기와 같이 발생하며,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부여함.

※ 당직 근무는 시설의 정기적 감시, 긴급 문서·전화 수신, 기타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등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으로, 특별한 상황 미발생 시 최소 8시간 이상의 취침 및 휴계가 보장됨.

## 5. 제출서류

- 이력서(첨부서식) 1부
- 자기소개서(첨부서식) 1부
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(첨부서식) 1부
-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에서 이수한 상담원 교육과정(100시간) 수료증 1부
- 이력서에 기재한 최종학위 증명서 1부(면접일 제출 가능)
- [해당자의 경우] 재직증명서·경력증명서·자격증 사본 등 각 1부(면접일 제출 가능)

## 6. 접수 및 문의

- 접수 방법: 이메일 접수(1366smws@gmail.com)
- 문의 전화: 010-3691-1366

## 7. 기타 사항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,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,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, 또는 적격자 부재 시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자의 결격 사유 발견·임용 포기·중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,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면접 심사 80점 이상인 예비 합격자의 차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·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,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구직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해당 절차 종료 후 자체 삭제합니다.